HANKUK
Lawfirm

주소: 베트남 호찌민시 자딘동 응우옌주이 거리 1D
웹사이트: https://hankuklawfirm.com/en/
이메일: info@hankuklawfirm.com
연락처 / Zalo: 0942.339.063
카카오톡: HANKUKLAWFIRM

NEWSLETTER

통지 제38/2026/TT-NHNN호: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활동에 대한 외국환 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

자세히 보기





HANKUK Lawfirm

적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FIE)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투자자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협력계약(BCC)에 참여하는 경우



PPP 프로젝트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PPP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



석유·가스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의 회원기업



허가받은 은행 및 관련 기관과 개인



신설 개념

베트남 외국인투자자본계좌란 제6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허가받은 은행에 개설하여, 통지 제38호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활동 및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서 베트남의 나머지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수입·지급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외화 또는 베트남 동화 표시의 지급계좌를 말한다(이하 “투자자본계좌”라 한다).

대체

“직접투자자본계좌” 또는 **“외국인직접투자자본계좌”** 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허가받은 은행에 개설하여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외화 또는 베트남 동화 표시의 지급계좌를 말한다.

HANKUK
Lawfirm

용어 명확화

0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대체하여 투자 관련 법령과 외국환 관리 관련 법령 간 용어를 일치시킨다.

02 자기보유 외화

통지 제38/2026/TT-NHNN호 제3조 제4항: “*4.* 자기보유 외화란 국내 투자자의 지급계좌에 보유된 외화를 말하며, 베트남에서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차입한 외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차입한 외화는 본 규정상 “자기보유 외화”로 보지 않는다



HANKUK Lawfirm





출자지분 양도

	거주자 매도인	비거주자 매도인
거주자 매수인	✕	투자자 본계좌
비거주자 매수인	투자자 본계좌	✕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M&A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통지 제38호 제6조에서 정하는 기타 경우)

계좌 개설

직접투자자본계좌 (DICA)

- 출자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구성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지 못하고 출자금을 반환한 경우
- 해산/파산 또는 영업활동 종료
- 프로젝트 양도로 최초 등록된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자본계좌 폐쇄

출자금 반환액 및 적법한 수입금을 허가받은 은행의 지급계좌로 이체

해외 / 국제금융센터로 자금 송금

투자자본계좌 폐쇄

M&A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이 상장되거나 거래가 등록된 공개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계좌 개설

간접투자자 본계좌 (IICA)

예외: 외화대출, 외채 상환 또는 적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를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의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

HANKUK Lawfirm

계좌 개설 서류

-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 신청서 (은행 소정 양식)
- 투자등록증(IRC) 또는 투자정책 승인 결정서
- 기업등록증(ERC)
- 법정대표자의 여권 / 시민신분증
- 기업의 서명 견본 및 법인 인감
-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통지 제06/2019/TT-NHNN호

종전 규정

경제조직 설립 (IRC 취득 전)

↓

DICA 개설
(정관자본금 및 투자 준비 활동에 필요한 적법한 비용만 수취 가능)

↓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등록증(IRC) 취득

↓

통지 제38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계좌의 모든 거래 수행 가능

통지 제38/2026/TT-NHNN호

신규 규정

ERC가 IRC보다 먼저 발급되는 경우의 투자자본계좌에 관한 신규 규정: 동일한 은행에 외화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 동화(VND)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다음 3가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i) 정관자본금 및 계좌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취, (ii) 투자 준비 활동을 위한 적법한 비용의 지급, (iii) IRC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자금의 반환.

투자자가 여러 종류의 외화로 출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허가받은 은행에 각 외화별로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은 투자자본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서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 및 회원기업에 대한 자금 이체 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이체 지시서에 이체 금액 및 이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주요 유의사항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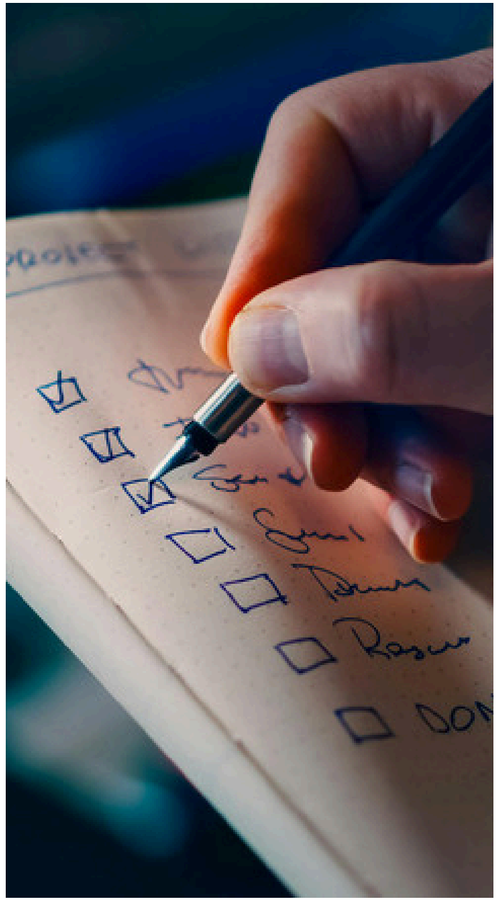
법적 요건 및 주체

계좌 개설 의무 여부 확인
정확한 자금 수취인 확인
기업 내 출자비율/지분율 검토
출자 일정 및 기한 유의

18/08/2026 - 18/08/2027

석유·가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투자자본계좌 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본계좌를 폐쇄하여야 함



HANKUK Lawfirm







감사합니다

당사의 전문가 팀과 상담하시고, 최신 규제 요건을 업데이트받으며, 귀사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Website

https://hankuklawfirm.com/en/

KakaoTalk

HANKUKLAWFIRM

Phone

0942.339.063